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신 : 의장

제 목 : 국가재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9년 10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번호 : 02-723-5052 (담당 : 이송희 010-2298-2867)

소 개 의 원 : 국회의원 백재현 인



의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장	총장	의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성명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명	국가재정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9년 10월 30일

소개의견

60%가 넘는 다수 국민들이 사업강행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일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에서 촉발된 마이너스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또다시 국민과의 아무런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떠넘기려 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5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반드시 거치도록 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요건이 명시돼 있는 관련 시행령을 지난 3월 개정하는 과정에서, 면제요건에 대해 예방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책사업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의심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이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모범인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청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찬성하며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백 재 현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번	의원명	날인	소속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비고
	김성순		민주당	국토해양부	송파구 병	
	박영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구로을	
	조승수		진보신당	자치경제위원회	울산북	
	김효숙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남 담양·곡성·거제	
	유원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비례대표	
	강성종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의정부을	

국가재정법 개정 청원안

2009. 10. 30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특히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한 제도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실시를 배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재조사의 대상 여부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실시를 배제할 우려가 있 있으므로 재조사 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또한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도출된 것으로 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추가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나.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함(안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u><개정></u></p>	<p>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복원사업 2.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3.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4.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생략)	1.(현행과 같음)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u>중인 사업</u>	2. ----- -----이나 법령의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업
<신설>	

참고자료

≪ 예비타당성 제도 ≫

1. 예비타당성 제도란?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강제하는 제도임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해야 함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등이 포함됨

2. 예비타당성 제도 내용과 그 중요성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부처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 실제로 지난 1994 ~ 1998년 중에 완료된 부처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총 33건 중 단 1건(울릉도 공항건설 사업)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폐기되었음.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계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타당성 있음	32	9	6	1	14	1	1
타당성 없음	1	1	0	0	0	0	0

출처: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 이에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한 것임
-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제안된 전체 335개 대형국책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147개의 사업들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폐기 및 정리

(건, 조원, %, 2008.2월 말 기준)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8	24	46	11.2	52
2007	45	16.8	26	58	10.6	63	19	42	6.2	37
계	335	168	188	56	85.3	51	147	44	81.7	49

출처: 2009 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차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됨. 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건설 예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기여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1999년에는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시행령(제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 규정에서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과 단계별 예산편성의무만을 규정하였으며, 실제로는 기획예산처의 내부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고 있었음.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후 2006. 10. 4.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당시 재직 260인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고, 아래 사항의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
 1.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종전 입장

- 2004. 12. 6. 한나라당에서는 박재완·유승민·이한구·윤건영·이혜훈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독자적으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발의함. 한나라당에서 밝힌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음.

< 한나라당 발의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안 이유 중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공적연금·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세입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을 비롯해 세출소요는 계속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 그런데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음. 이래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정이 맹들 수밖에 없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략)

-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은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제하고 있음.

< 한나라당 발의의 국가건전재정법안 중>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발의인인 박재완 의원은, 국회 토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한 재정 편성을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예산을 만들고 우리의 재정과정을 선진화하고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통제와 구차한 절차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함(제253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중).

- MB 정부 또한 출범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더욱 강화

하는 방향으로 출발하였음. 예컨대 2008.7. 22.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 10% 절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500억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4. 4대강 사업 등을 앞두고 MB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한 돌변

- 2009년 3월 17일 MB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 13조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들 >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이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자면서, 현재의 국가재정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였던 국가건전재정법까지 발의한 한나라당의 종전 입장과 배치. 또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도입하겠다는 MB정부 초기 입장까지도 배치되는 것임. 결국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임.

-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의견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대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모호한 조항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제 38조 제 1항)과 헌법 제 75조의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 및 위임한계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음.

- 또한, 국회법 제98조의 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관 상임 위원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9년 KDI에서 발표한 '재정법률 개선과제'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제 10호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참여연대와 KDI 등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뒤늦게 한나라당에서는 시행령에서 새로이 추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들을 고스란히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대표발의원 이주영 의원).

5. 예비타당성 제도와 4대강 사업

-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으로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
- 실제로 현재 4대강 대부분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면제 됨. 즉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상당수를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재해예방'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사유임. 그러나 '재해예방'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대단히 농후함. 만일 종전 시행령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임.

- 설사 4대강 사업이 '재해 예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배제 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정부는 일부 4대강 사업의 경우, 형식상 5백억 미만의 사업으로 과편화함으로써 예비타당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단일한 정책의지와 추진주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국책사업이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4대강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MB정부의 독주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이번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는, MB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강조해 오던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것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붙였다 뗄 수 있는 장신구에 불과함으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6. 자전거도로를 통해 본 예비타당성 제도

- 2006년 KDI의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회적 필요성이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자전거 도로의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은 수도권, 서해안·남해안을 연계하는 1,218km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북한산국립공원->행주대교 하부->강화군->목포->부산). 그러나 위 사업은 '자전거 수요 증진과 녹색교통수단, 미래 선진관광·레저형 테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가존 도로와의 접속성, 용지보상비 및 유지보수비, 위험성, 재원조달가능성, 5년 이내의 단기간 내 구축으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

- 즉 AHP 방식에 의한 평가결과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인데,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6명의 평가자 중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0.5 이상을 평가한 사람은 단 1명도 없고(최고 0.336부터 최저 0.195), 평균 0.237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 특히 위 조사에서는, 일반 교통수단의 대체개념이 아닌, 레저기능을 수행할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이 사업의 타당성을 측정할 관건이라고 전제한 후,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의 사회적 필요성이 궁정되나 그 구축은 보다 현실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예컨대 먼저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본 사업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조언을 함.

- 현재 4대강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낙동강 구간 자전거도로(549km, 653억원)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한강구간의 자전거도로(189km) 사업비용은 244억원, 금강구간(248km)과 영산강구간(220km)의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
- 그러나 종전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을 반추하여 볼 때, 나머지 자전거 도로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수행에 대한 외압 논란이 늘어남에 따라, 낙동강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국민들에게 수긍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7.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예비타당성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서, 수 년간의 경험으로 그 사회적 필요성이 검증된 제도임. 예비타당성 제도는 여야를 막론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국가재정 운용의 원칙 중 하나임.
-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4대강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미 일부 시행된 대규모 사업들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타당성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청원인 성명 :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이승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전화번호 : 02-723-5052 (담당 : 이송희 010-2298-2867)